

언론피해구제의 실제
-언론중재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성 낙 인
영남대 법학과 교수·중재위원

1. 정보화사회에서의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조화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세계각국의 헌법과 인권선언에서는 언론의 자유보장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헌법에서도 언론의 자유보장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음과 동시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도 분명히 하고 있다. 제 21 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언론의 자유보장의 기본전제는 모든 국민의 언론의 자유이다. 하지만 종래 국민의 입장에서 스스로 말하고 표현할 자유를 누리는 것 못지 않게, 언론보도를 통한 빠르고 빠른 정보의 입수를 갈망해 왔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언론의 자유는 흔히 언론보도의 자유를 지칭하기도 한다. 실제로 정보화 사회가 성숙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국민들이 접하는 대부분의 정보란 언론보도라는 일방적인 통로를 통하여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왔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이제 국민들도 단순히 언론보도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정보의 일방적인 수용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보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된 시점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화 사회가 성숙되기 이전의 단계에서는 권위주의적인 통치체제와 맞물려 언론보도의 자유 창달이 곧 나라의 민주화를 성숙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그간 국민들은 언론보도의 자유 창달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이와 같은 국민적 여망에 힘입어 뜻있는 언론계 인사들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한 것 또한 사실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국민들은 언론보도로 인하여 야기되는 크고 작은 실책이나 피해에 대해 비교적 동정적이고 온후한 자세를 견지해 온 것으로 보아도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바뀌었다. 권위주의적인 통치체제도 상당히 불식되어 있고 이에 따라 언론보도도 정치권력에 의한 특별한 통제나 억압도 받지 않게 된 상황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의 급속한 산업화 사회로의 진전은 곧 21 세기를 향한 정보화 사회의 성숙으로 치달게 됨에 따라 정보의 홍수시대를 맞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접하는 정보란 것이 종래처럼 언론을 통한 일방적인 정보의 수용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처하면서 국민의 사생활은 발가벗겨지게 되고 정부 전산망의 완비 등으로 이제 「권력에 의한 사람사냥」이라고까지 평가될 정도로 국민의 사생활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공·사기관의

국민에 대한정보처리로 인한 피해도 지난번 「지존파사건」에서 보듯이 신용정보의 유출이 엄청난 국민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적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서 정부 정보공개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다.

언론보도도 이제 단순히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기능에 자족할 것이 아니라 언론소비자인국민 개개인에게 미칠 영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국민의 권리의식의 고취와 더불어 사생활침해의 위기적 상황에 비추어 언론보도는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비가 부족해 보였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다. 그간 한국 언론은 신문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자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보았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바 있다. 최근에는 각 언론사별로 윤리실천강령을 제정하여 언론보도에 따른 국민의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을 방지하려는 일련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언론사 스스로 독자 옴부즈맨 등의 란을 개설하여 독자들의 반론을 보장해주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언론보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구제는 언론제의 자율적인 구제장치로는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하여 야기된 국민의 피해를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을 통하여 법적인 구제를 받으려는 제소건수는 점증일로에 있다.

이제 언론도 종래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기능에 집착하여 자칫 소홀히 다루어 왔던 국민 개개인의 인격권의 보호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할 것이다. 독자들이 원한다는 상업적인 이유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보도로 인하여 야기될 사회적 파장 및 그 그늘에서 피해를 보는 개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언론보도의 기본자세에 뿌리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지난번 삼풍사건보도에서 초기에 언론이 보여준 무차별적인 취재보도자세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았음을 언론 종사자 스스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

이에 본 고에서는 현재 언론침해구제제도에 관한 법적 장치로서의 언론중재위원회에의 중재신청과 법원의 제소를 통하여 나타난 구체적 사례를 검토해 봄으로써 피해구제의 법적인 현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동시에 언론 종사자들에게는 이러한 구체적 사례의 검토를 통해서 언론보도에 따른 국민의 피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 인식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II. 정정보도청구권의 판례이론을 통한 정립

1. 반론권의 제도화와 언론중재

언론침해에 대한 피해구제제도로서의 일반법적인 것으로는 민·형사상의 권리구제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병적 구제제도는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고 손해 등 법익의 침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송제도의 성질상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언론에 의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는 매우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언론 관계자 스스로에 의한 자율규제기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으나, 언론의 자율기구라는 스스로의 한계를 안고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반론권을 제도화하고 있다. 반론권은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이에 대한 반론의 게재 또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언론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모든 권리의 출발점인 동시에 그 구심점을 이루는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따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각 나라의 역사적전통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엄중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방법에 의하여 그 해결책을 찾았다…… 반론권제도를 받아들인 나라들의 법제는 오늘날 크게 프랑스형과 독일형을 들 수 있다. 프랑스형의 반론권은 사실적 주장은 물론 논평비판 등의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대해서도 반론을 허용하여 반론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데 반하여 독일형의 경우는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반론을 허용하여 반론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 1)

프랑스판례: 「1881년 7월 29일 법률 제 13조에 의거한 반론권은 일반적이고 절대적이다. 반론의 적합성 및 범위, 내용 등에 관해서는 오로지 청구인만이 판단할 수 있다. 법률, 선량한 풍속, 제 3자의 정당한 이익 혹은 언론인의 명예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반론게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2)

2. 법적 성격 3)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법문상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반론권 또는 반박보도청구권으로 보아야 하며 그 합헌성도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언론기본법이 제정된 직후인 1983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이후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재차 확인된 바 있다. 특히 1988년 헌법재판소가 개소된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성격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바 있다.

① 「현행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언론의 자유와는 비록 서로 충돌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전체적으로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3항, 제 19조 제 3항은 결코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한다. 」 4)

②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제목의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이의대상이 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위 권리의 제목이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반박보도청구권이라고 표현하였어야 옳을 것이다. 위 규정의 의의는 피해자에게 보도내용의 진실을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케함이 없이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여지거니와, 언론사측으로서도 보도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마다 일일이 그 진실여부를 소상히 가려내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면 언론의 신속성과 신뢰성은 저절로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를 이의가 제기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가려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한 요건하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함이 언론의 신속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5)

③ 「정정보도청구권은 현대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으로부터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높이며 제한적이거나 언론에 대한 공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와 별도로 정기간행물등에 특정인에 대한기사가 게재된 경우 그로 하여금 신속하게 원래의 기사의 범위 내에서 반론을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권리를 마련한 것 ……」 6)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언론에 대한 반론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이러한 반론권은 국민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헌법 제 10 조)을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반론권은 언론에 대한 공공의 접근을 보장하는 점에서 현대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언론에 대한 액세스권의 일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즉 반론권은 언론 스스로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 대해 반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종래 언론보도의 일방통행적인 정보흐름에 대하여 언론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직접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의 중요한 한 내용을 이룬다. 이렇게 볼 경우 반론권은 단순히 인간의 인격권의 실현이라는 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언론의 자유(헌법 제 21 조)의 한 내포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7)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판례에서 반론권의 본질을 인격권에서 구하고 있으며 반론권제도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음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정보도청구권이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정정보도문을 무료로 게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는 현실적으로 정기간행물의 편집 및 편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됨은 물론 간접적으로 보도기 관의 보도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경영을 압박함으로써 보도의 자유에 대한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반론권은 보도기관이 사실에 대한 보도과정에서 타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요청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인 것이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소극적 필요에서 마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도기관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의 문제는 결국 피해자의 반론권과 서로 상충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두 기본권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결국은 이 법에 규정한 정정보도청구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목적이 정당한 것인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수단 또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인격권과의 사이에 적절한 비례를 유지하는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위와 같은 소론에는 찬성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반론권의 본질을 단순히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서만 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실시한 반론권 의 인격권적 측면과 언론의 자유실현의 측면중에서 인격권적인 측면에 얽매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논리의 일관성을 견지하고 있지 못하다. 반론권은 단순히 인격권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언론 자유의 중요한 하나의 내용을 이루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무엇보다도 인격권으로서의 반론권과 언론의 자유를 대비시켜 기본권 충돌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현대적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결정에서 현재는 언론의 자유를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의 언론의 자유란 종래 언론기관의 보도를 통한 일방적인 의사전달의 체계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언론기관에 액세스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언론 자유의 중점 내지 본질을 언론기관의 일방적인 보도의 자유에 한정하는 시각은 올바른 시각이라고 볼 수가 없다. 반론권은 인격권 실현의 측면과 동시에 언론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직접적인 액세스의 실현을 통한 표현 자유의 적극적인 실현수단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반론권의 본질을 국민의 언론의 자유창달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언론 자유의 본질적인 한부분으로 볼 경우, 자연히 언론의 자유와 반론권을 대비시켜 기본권의 상충의 문제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헌법재판소의 설시는 그 타당성의기반을 상실한다. 즉 반론권에 관한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는 기본권 상충이라는 시각은 이제 언론의 자유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반론권과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라는 동일한 기본권 내부의문제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8)한편 정정보도청구권의 본질을 반론권으로 이해하는데에는 우리 법의 모태로 알려지고 있는 독일 바델 뷔르텐부르크즈의 언론법에 비추어 일정한 제한요건이 부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간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제도로 오해되고 있음에 비추어 현재의 일부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9) 이에 따라 정정보도청구제도는 약식절차에 의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입법촉구 결정을 취하고 있다. 「제 19 조 제 3 항이 위헌을 면하려면 기사관련 당사자의 반박문 게재 청구인 것으로 순화되고 뚜렷해지도록 현행법의 표현부터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고 언론기관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회복처분이 정정보도청구인 것으로의 오해 소지가 불식되도록 법이 새로 고쳐지고 다듬어져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는 반박문 게재의 재판절차가 비록 가치분절차에 의하여 심리된다 하여도 헌법상의 절차적 기본권의 침해의 위헌소지는 깨끗이 청산 될 수 있을 것이라 보며 이에 우리는 위헌소지 제거를 위한 새 입법을 촉구하는 바이다.」 언론중재를 통한 정정보도청구권제도란 그것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국민 개개인의 인격권과 언론자유 창달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헌법상 보장된 절차적 기본권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정식재판절차가 비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신속한 권리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을 지나치게 소홀히 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국민의 사법에 대한 액세스가 쉽지

않은 한국적 현실을 무시한 채 정식재판절차만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권리구제에 역효과만을 남을 우려가 있다. 또한 언론중재가 성립되지 많은 경우에 국민에게 궁극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재판을 보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소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미국에서도 오늘날 국민 권리 보호의 실질성과 경제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식재판 이전단계에서의 중재절차인 「중재법」이 새로이 발전하고 있음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문제가 있는 정정보도청구권제도를 반론권으로의 명실상부한 입법을 촉구한 입법촉구결정은 귀담아 들어야 할 소중한 소론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결정문에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입법촉구결정의 취의는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정정보도청구권의 주체: 「피해를 받은 자」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주체이다. 생각컨대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권으로 이해하고 그 반론권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장에 따른 인격권 및 언론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전제로 한다면 정정보도청구권의 주체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주체에 관한 일반이론이 원용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내외국인을 포함한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이다. 한편 정정보도청구권의 본질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있음에 비추어 민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는 당사자 적격에 관한 이론이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에 따라 권리능력없는 사단(종중등)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제 49 조)의 인정여부에 엄격히 구애될 필요없이 정정보도청구권의 주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정보도청구권의 재판상 행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신속 엄정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특수한 소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그 절차나 당사자의 문제에서 엄격한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취지가 아니며……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 능력이 인정 된다.」 10) 「서울 모대학 정모 교수 등 2명」이라고 보도하여 신청인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할 수 없다는 KBS의 주장(94 서울중재 272)에 대해 법원은 「동시간대 또는 그 전후로 보도·방송된 TV 뉴스 및 신문 기사를 종합하면 신청인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11) 「기사에서 신청인들이 직접 지명되지는 않았으나, 기사의 주인공이 모두 서울대 사회대 86 학번 여학생 총 48 명중 11 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사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하다.」 12) 「신청인들을 영문 이니셜을 사용한 K 교수, C 씨 등으로 표시했지만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후 문화방송노동조합이 발행하는 노조 특보에서 이 사건 기사를 인용하면서 K 교수와 C 씨 등은 신청인들이라는 내용을 게재한 사실에서 볼 때 기사와 신청인들간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하다.」 13) 이에 반하여 한국기자협회지부에 대해 당사자 능력을 부인한 판례는 앞의 판례이론의 일반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한국기자협회 총청 복도지 부는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독립된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한 바,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4) 정정보도청구권의 주체를 (피해를 받은) 자로 한정 한 것은 정정보도 청구권의 과도한 행사로 인하여 언론의 보도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 법의 배려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여기서 피해를 받는다는 의미를 너무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자칫 정정보도청구권의 다른 요건을 갖추고도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피해를 받은 의미를 독일법상의 관련성 정도로 넓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그 관련성은 보도내용과 피해자의 고유한 이익간에 일반적인 연관성만 있으면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관련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키며,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지의 유무를 판단하는데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15)

4. 정정보도청구권의 객체: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적 주장」에 한정된다. 따라서 가치판단에 대하여는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프랑스법적인 반론제도보다는 독일법적인 반론제도의 입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원문 기사를 두고서 그것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혹은 가치판단에 관한 것인지의 판별은 결코 쉬운 일 만은 아니다. 입법론적으로는 반론권의 객체를 논평등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제의 글은 게재한 목적이 종교적 성서적인 관점에서의 신청인 교단의 교리 비판에 있음이 명백하다…… 가치 판단이나 의견에 대한 문제는 독자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며 가치판단에까지 반박할 권리를 인정하면 언론 활동이 마비 내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 16)

「사실에 대한 타인의 논평을 인용한 것에 불과해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사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17)

다만 정정보도청구권의 본질상 보도된 사실적 주장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앞에서 설명한 정정보도청구권의 본질에 비추어 보건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즉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한다.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서 진실에 부합하는 원문보도에 대하여도 정정보도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18)

「정정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는 정확성과 완전성의 심사가 가능한 사실적 주장」 19) 이어야 하며, 「어떤 보도나 표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느냐, 가치평가 또는 의견에 해당하느냐는 그 보도표현 내용에 대한 입증가능의 여부에서 구해야 할 것」 20)이다. 법원은 대체로 위와 같은 준거하에 사실적 주장의 범위를 폭 넓게 인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른 중앙 일간신문의 기사와 수사 기록의 일부 또는 수사관의 진술을 그대로 보도했음지라도 그것이 주간경향에 보도된 이상, 이는 주간경향의 사실적 주장이 됨으로 신청인이 반박할 권리를 갖게 되며, 기사가 공익과 관련되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원문 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정정보도청구권까지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21)

「반응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일단 그 내용이 동아일보를 통하여 공표된 이상…… 이미 동아일보의 사실적 주장이 되었다。」 22)

한편 위와 같은 판례의 흐름에 비추어 보건대 「이들 클럽이 사기성이 없다면 그 많은 광고비를 어디에서 충당하겠느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는 부분은 그 전제가 된 사실에 대한 타인의 논평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지 위 기사내용이 사실적 주장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23)는 판례는 사실적 주장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으로 비판의 소지가 있다.

단순히 외형상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라는 평가적 의미를 내포하는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로 국민의 피해구제로부터 언론이 회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사진이나 만화 등 상징적 표현에 대하여도 정정보도청구권은 인정된다.

「오로지 보도를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본인들의 승락없이 사진 등을 무단으로 게재했다면 이는 초상권침해에 해당된다。」 24)

「사전에 본인으로부터 사용용도나 목적등에 관해 동의를 얻어 그 범위내에서 이를 사용한 경우는 성명권 또는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5)

광고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정간법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법원은 광고에 대해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광고는 언론기관이 광고주와의 관계에서 광고계약에 의하여 광고주의 재인적인 의사표시를 그대로 게재하여 주는 광고주의 주장이지 언론의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광고는 언론이 그 대가를 받고 게재하여 주는 것임에 반하여 정정보도는 무료로 게재하여 주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광고게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광고주 또는 언론기관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구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언론기본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26)

5. 정정보도문에 대한 정정보도

첫째, 정정보도문의 대상인 원문 기사를 작성한 자가 정정보도문의 보도 이후에 다시 제 2 차적으로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것은 언론보도자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의견개선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인정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둘째,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언론사에서 정정보도문의 앞이나 끝에 언론사의 사실적 주장을 보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정정보도문에 대한 재반론 또는 보충적 반론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있다.

「정정보도심판에 따라 반박보도를 게재하는 언론사가 여전히 종래의 사실적 주장을 고수하는 경우에 별도의 기사가 아닌 반박보도문 안에서 그 주장을 간략하게나마 실을 수 있도록 하여 독자들이 쉽게 비교, 대조하여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정법상 명문의 근거는 없으나 반박보도청구권의 본질상 언론사에 대하여 이러한 보충적 반박권 내지 재반론권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 타당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언론의 자유나

평등조항의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점에서 정정보도심판을 행하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이를 인정 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27)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서는 실정법상으로 정정보도의 본질상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법원의 재량론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8)

6. 측외(정정보도의 게재 거부)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주체나 객체에서 오히려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것은 언론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국민의 보다 신속·경제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그 제도의 본질이 있음에 비추어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의 권익보호라는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현대적인 정보화사회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실현해 주고 있는 언론의 보도기능을 본질적으로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 이에 정간법에서는 정정보도청구권의 실질적인 보장이라는 대전제하에, 이에 반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중대한 예외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국민과 언론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의 규범조화적인 방향으로의 정정보도청구권제도의 정립을 도모하고 있다. 즉 법 제 16 조 제 1 항은 정정보도청구권을 보장하는 원칙적 규정이라면, 제 3 항 이하에서는 예외조항을 명시 하고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제 16 조 제 3 항 단서).

앞에서 적시한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는 예외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정정보도청구권의 남용에 따른 언론의 보도기능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당한 이익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실질적 요건이 라고 할 수 있다.

「사실보도에 관하여도 신청인의 권리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예컨대, 원문보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정정보도를 구하는 사항이 지엽말단적이고 사소한 점에 관련됨에 불과하거나, 언론기관 자신이 속보 등의 형식을 빌어 전의 보도를 충분히 정정하거나, 언론기관 스스로 피해자에게 별도의 반론기회를 부여하였다거나, 요구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원 보도와 다른 내용이 없거나 오히려 이의대상인 보도내용을 합리화하는 내용인 경우, 인터뷰등에 의한 충실한 보도가 있는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원문 기사를 왜곡 해석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정정보도를 함으로써 오히려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경우 등에는 언론기관이 이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다.」 29)

정당한 이익의 범주에는 언론이 공익을 위해 보도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다. 따라서 법상 명문으로 공익을 위한 보도를 정정보도 게재 거부사유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 이론상 이를 인용하는데 이론이 없다.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의 공개이익과 개인의 명예 등 법익보호 필요성 사이의 이해조절관계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사실보도에 한하여 반박 또는 해명을 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그 범위내에서 행사되는 한 정당한 것이고 또한 관계인의 반론을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언론의 공개이익만을 내세우는 위 주장도 이유없다.」 30)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의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진실을 추구하여야 하는 언론의 직업 윤리상 의무와 언론이 갖는 사회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인지의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의 경우 이를 해결하기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방송법 제 41 조 제 3 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란 그 정정보도의 내용이, 널리 사회일반에 걸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지의 사실로 되어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다.」 31)

3) 정정보도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정정보도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반론권보장의 측면 보다는 오히려 신청인측의 상업적 광고수단으로 오용될 소지를 미리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이 규정은 운용되어야 한다.

4) 정정보도가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이의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5) 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된다.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공개회의에서는 이미 당연히 반론주장의 교환이 예견되므로 굳이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법원은 「사실기사」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절차에서 채취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를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보도의 형식으로 보도하지 아니하고 언론기관이 스스로 지득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경우에는 위법조항에서 규정한 제외 예에 해당할 수 없을 것이다.」 32) 같은 맥락에서 비록 공개재판절차와 관련성이 있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검찰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 제출하여 기록에 첨부된 진술서를 신문기자가 열람하여 그 내용을 요약한 보도」를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로 보지 아니한다. 33)

7.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34)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언론사에 직접 청구하거나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재가 성립하지 아니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제 1 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정정보도심판 신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정간법 제 16 조제 3 항 내지 제 5 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 697 조 및 제 705 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정보도심판 청구사건은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는 것이므로 정정보도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 703 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이나 항소를 하는 외에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있다(정정보도청구사건 심판규칙 제 8 조). 이러한 비교적 간소한 재판절차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반론제도의 특성상 당연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재를 필요적으로 거친 후의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심판을 상당한 기일이 걸리는 본안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한 것이 유별나게 신속성을 강조한 것이어서 부당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해자가 본안소송에 의하여만 그 권리를 구제받게 된다면 대중이 그 사실을 망각한 다음에야 비로소 구제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므로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다.」 35)

8. 정정보도심판에 불응하는 경우의 효과

정정보도심판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는 이의신청과 항소만이 인정된다.

정정보도심판 신청을 인용한 재판의 집행은 이른바 불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 693 조에 의한 간접강제의 방법을 원용할 수 있다. 이행기간 지연에 따른 배상액 또는 즉시 손해배상액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간과 액수가 정해져야 한다.

III. 정정보도의 실제

1.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형식

정정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정정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정정보도문의 작성형식은 원문기사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정정보도신청내용이 기재된다. 다만 사진이나 만화의 경우에는 동일크기의 사진이나 만화 혹은 정정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정정문의 보도는 원칙적으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동일한 지면에 기사형식으로 게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하급법원판결에서 정정보도문을 광고란에 게재하도록 명하고 있는 것은 정정보도청구권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아야 하리라고 본다.³⁶⁾

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정보도문에는 이의의 대상인 원문기사가 특정될 수 있도록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정보도문의 사실적 진술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정정보도문의 사실적 진술에서는 진실에 반하는 주장의 정정보도문과, 진실에 합치하나 오해의 소지를 해소해 주는 정정보도문이 있다. 이와 같이 원문기사의 내용은 그 진실성 여부가 문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정보도문의 경우에는 진실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것은 무기대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만」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정당한 이익을 가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형사상 처벌받은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2. 구체적 사례를 통해 본 정정보도 37)

(1)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95 서울중재 173)된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청구인의 정정보도청구가 인용된 대표적 사례: 최근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어 오던 이른바 「전관예우」 보도에 대해 담당재판부의 제소에 대해 KBS 가 이를 정정보도방송을 한 바 있다.

KBS 와 사과방송문안 타결문

- 방송날짜: 6 월 30 일
- 방송순서: 종전방송과 동일한 순서로(종전 9 시 뉴스는 10 번째임)
- 우측 상단 화면(Effect): 종전 보도와 같은 형태로 법원 마크를 표시하고, 「정정보도」라는 문구를 표시
- 아래의 자막(Super): 「조 전 장관 보석결정, 전관예우 아니다(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됨)」의 문장을 계속적으로 표시(글자는 통상의 뉴스보도와 같은 크기로)

남자 진행자(메인앵커)로 하여금 합의된 별지 1 「정정보도문」을 뉴스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제목: 조 전 장관 보석결정은 전관예우가 아닌 것으로 확인됨.

지난 9 일밤 9 시 뉴스의 조철권 전 노동부 장관에 대한 보석결정과 관련된 보도에서, 위 보석결정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의 의혹이 짙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1 형사부는 조 전장관의 보석결정은 법과 양심에 따라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장관에 대한 재판부의 구속집행정지 결정도 검사와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 전 장관에 대한 건강상태를 엄격히 조사한 후 결정했고 이 사건과 관련해 누가 주범이고, 하수인인지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사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보석결정을 전관예우라고 보도함으로써 담당재판부의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전 노동부 장관에 대한 보석결정에 대해 「전관예우」라는 KBS 의 보도가 있자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 1 부는 즉각 KBS 에 항의서한을 보냈으며 급기야는 사상 처음으로 판사일동(서부지원)이 방송국에 엄중 항의하는 서한을 보내 법조계 및 언론사의 관심을 끈 바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법관은 판결로서만 말한다」고 하는 종래의 정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고 찾으려는 자세로 변했음을 보여주는 일련의 흐름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사실 이 사건의 정정보도로 인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KBS 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그 보도내용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는 「사죄광고」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하여 언론에서는 KBS의 사과(사죄)방송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우선 이 사안에서 방송의 특성상 뉴스 시간에 이렇게 긴 정정보도방송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것도 KBS는 원래 이 보도가 방송된 바 있는 9시 뉴스와 11시 뉴스라인에 동시에 방송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화면구성에 관한 사항까지도 양해하고 있음도 이례적인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필자로서는 우선 KBS가 「전관예우 의혹」 보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언론보도나 학자들의 평석을 통하여 얼마든지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첫째, KBS의 보도와 같은 전관예우라는 미묘한 사안에 있어서 의혹이 야기될 수 있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취재와 보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이와 같은 미묘한 사안을 KBS가 보도하면서 담당재판부의 반론을 동시에 게재해 주지 않은 것이 정정보도의 결정적인 하나의 이유가 된다.

한편 KBS의 보도에 대해 서부지원 법관 일동의 명의로 항의서한을 보낸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한 보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도된 사안이라 법관들이 과잉반응을 보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화과정에서 집단이기주의적인 경향의 표출이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법관마저 당해 소속집단 이익의 대변자로 나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중재불성립에 따른 사죄광고방송청구소송

KBS-TV의 「21세기강좌」에 출연하여 60분짜리 강연을 하기로 하고 녹화하였으나 1989년 10월 24일 보도에서는 40분만 보도됨으로써, 강의의 본질적 내용이 왜곡되었다는 취지하에 언론중재(89서울중재 37)를 신청하였으나 KBS의 거부로 불성립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법원에 사죄광고방송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강좌내용을 여러 부분 삭제해 모호한 형태로 시청자 등에게 방영 원고의 <中民 이론가>로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20분간의 강의내용의 삭제로 말미암아 중민이론가로서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하라」고 판시하자 KBS는 이에 불복 항소하였다.

서울고법은 「강좌를 녹화한 후 그 내용의 일부를 삭제 편집하는 것은 방송운영 주체의 고유한 권리인 편성권에 속한다」고 판시하면서도, F60분간 방송하기로 한 프로그램을 그 녹화 내용대로 방송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삭제 수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계약을 침해함과 동시에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전보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본 방송사는 한상진 교수의 강의 프로그램 녹화 방송시 20분간의 내용을 삭제하여 중민이론가로서의 한상진 교수의 강연내용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고지방송을 하라고 판시하였다. 이 방송은 1회 1분 30초간 연속하여 5주에 걸쳐 총 5회 실시할 것을 명하고 있다. 이 사건은 KBS측의 상고 포기로 확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언론보도의 특성상 연설·대담·토론 내용의 전부를 보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언론기관의 독자적인 편집·편성권을 인정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내용의 본질이 왜곡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이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3) 정정보도게재 판결(서울지법 서부지원 95 카합 1256)

국민일보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열흘에 걸쳐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본부의 비리의혹을 1면 톱기사 및 사설을 통해 보도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본부측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와관련 14건의 정정보도청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국민일보측은 장기간 기획취재한 것이라 하며 언론중재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신청인측은 법원에 제소하였다.

서울지법서부지원 민사 제 5 부는 1995년 7월 14일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본부장 박진택 씨가 국민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1면 머릿 기사를 포함해 13건의 반론문을 10일 동안 매일 게재하라고 판결하였다.

한편 박 본부장은 7월 24일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하고 또한 이행강제금으로 2억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일보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으로 대응했고 법원이 13건 중 4건의 반론문에 대해 1천만원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원심재판부는 나머지 9건의 반론문에 대해서만 그 게재를 촉구하는 간접 강제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이번 사건은 흔히 언론사에서 행하고 있는 특집 혹은 기획보도기사에서 본질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사는 언론의 사회적 공기로서의 기능을 확충시켜 주고 국민계도라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해 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지나친 의욕으로 인하여 보도내용을 기획의도에만 치중한 나머지 자칫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된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의 경우처럼 특집기획기사 자체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해 본질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권위가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한편 사안은 다르지만 최근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오보에 대해 세 차례의 사과보도뿐만 아니라 사설에서까지 사과보도를 하고 있음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아사히신문은 1994년 6월 발생한 나가노현 마쓰모토시 사린가스 살포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던 고노 요시유키(45)에 관한 기사가 오보였음을 시인하는 사과 기사를 1995년 4월 21일 내보낸데 이어 6월 14일에는 「고노에게 사과한다」는 사설을 실었다

이 사설에서 「이번 보도에서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새삼 통감한다」며 「고노와 가족에게 괴로움을 끼친 것을 사죄한다」고 밝혔다. 아사히는 또 지난 7월 8일자에는 한 면을 할애하여 고노가 누명을 쓰게 된 경위와 그에게 혐의가 없음이 밝혀진 자체 조사결과를 상세히 밝히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³⁸⁾

(4) 중재 불성립 이후 법원에서 기각당한 사례

조국통일 범 민족연합 남측본부결성 준비 위 원회와 동위원회의 재정소 위원장인 이관복 씨가 서울신문을 상대로 언론중재신청(92 서울중재 133)을 하였으나 불성립되어, 서울민사지법에 정정보도게재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신청인측이 패소한 바 있다.

서울신문이 1992년 6월 27일자 18면에 『국내외 망라한 북의 「주사」 추종집단』 제하의 기사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재야운동권의 친북 성향 인사들인 이른바 주사파 계열에 의해 장악되어,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 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시 사항은 다음과 같다(서울민사지법 92 카 649).

「위 신청인이 직접 거명되지는 않았으나 ..보도내용 등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위 신청인은 위법소정의 피해자라고 할 것이다. 」 「범민련의 제 1 추진 주체에 관한 기자의 주관적 판단 내지는 의견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기사에 관한 신청인들의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없다.」 「위 기사 및 정정보도문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정정보도에 관하여는 신청인들이 그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정정보도청구 또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이 판결은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면서도 보도내용에 대해 지나치게 사실보도와 논평부분을 엄격히 구분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미흡하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3. 언론중재신청의 현황

언론중재위원회가 1981년 3월 31일에 설립된 이래 1994년 말까지 지난 14년간 중재신청건수는 2,274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1981년에 44건에 불과하던 것이 1994년에는 무려 541건의 신청을 접수 처리했다. 특히 1989년 이래 그 신청건수는 특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나라의 민주화와 더불어 언론기관의 낭설에 따른 언론의 자질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이 그간의 규제로부터 벗어나면서 지나친 언론 자유의 남용까지 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언론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언론중재제도를 통한 피해의 구제에 대한 의식이 제고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신청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 2,274건의 신청사건 중에서 합의된 경우가 611건(26.9%)에 불과하며, 불성립이 569건(25%)나 되고 있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망되고 있다 또한 중재신청을 한 연후에 취하한 건수도 무려 1,028건(45.2%)에 이르고 있다.

침해유형을 보면 1994년 말까지 중재신청사건의 1,764건(77.6%)이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사건이고 기타 신용권(501건, 22%), 저작권(9건, 0.4%)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4년의 경우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사건이 422건으로 나타나고있다. 오늘날 정보화사회의 성숙과 더불어 사생활침해의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언론보도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기능 못지않게 발가벗겨지는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언론의 보다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재신청인의 유형을 보면 1994 년 말 현재 개인이 1,379 건(60.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회사, 일반단체, 기타 공공단체, 종교단체, 학교, 종친회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개인의 중재신청사건의 증대는 국민의 권리의식이 증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는 거대 언론을 상대로 중재제도를 통한 방법 이외는 별 다른 대응책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체 중재신청건수 중 1994 년 말 현재 25%가 불성립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합의결렬이 압도적 다수에 이르고 있다. 이에 합의결렬에 따른 강제중재권 부여 논의의 적실성을 찾을 수 있다.

중재신청을 하였으나 중재가 불성립되어 결국 법원에 제소하게 된 사안은 1994 년 말 현재 156 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인용판결을 받은 사건은 겨우 49 건에 불과하다. 이에 법원을 통한 개인의 권리구제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직권중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소위원회로 하여금 지면 심의를 통하여 중재신청 없이도 자체적으로 언론침해사항을 심의 해당언론사에 시정권고하고 있는데 1994 년 말 현재 1,742 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명예훼손 및 사생활침해가 724 건(41.6%), 미성년피의자 신원공표가 991 건(56.6%)임을 보면 언론보도의 신중함이 요망된다. 시정권고의 대상매체는 전체 95.5%가 일간신문이다.

4.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첫째, 현행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성격에 있어서 ..반론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에 관한 실무도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어 마치 언론기관이 자신의 보도에 대하여 잘못을 시정하는 내용의 정정문을 싣는 것인 양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39)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의 입법적 보완이 절실히 요망된다.40)

최근 언론중재제도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이의 입법적 보완책을 제시한 바 있다.41) 제도의 점진적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기존법률의 개정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본다면 반론권의 제도화에 관한 독립된 법률의 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42)

둘째,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제도가 이제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제도의 전형으로 자리잡은 이상, 민법 제 764 조에 의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전형으로서의 정정보도의 청구와 굳이 별개로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 언론중재의 실제에 있어서도 비록 법적으로는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권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론청구와 정정보도의 청구가 뒤섞여 있으며 실제로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관한 법개정 작업에 있어서는 이에 관한 분명한 입장정리가 되어야 하리라고 본다.43)

셋째, 언론중재 위원회는 그 용어상 중재(arbitration, arbitrage)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명칭에 부합한 중재기능인 일방적·강제적인 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못하며, 법적으로 당사자간의 협상과 합의를 도와주는 조정(mediation, méediation) 기능을 가질 뿐이라는 점에서 입법론적 보완이 요망되고 있다.

IV. 결

고전적인 언론의 기능에 현대적인 언론 자유의 변용과 더불어 언론의 자유에서 언론기관의 보도자유는 이제 정보의 일방적인 흐름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민과 언론의 정보 공유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적인 언론보도의 기능을 창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 언론에 대한 국민의 액세스권의 확보는 더욱 절실한 요망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으로서는 거대 언론을 상대로 한 자기의 권리구제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 언론도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에 동참하는 자세가 요망된다. 근자에 언론계 스스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언론윤리실천강령을 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정보도란 및 반론란을 마련해 주고 있음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일반 국민들의 의식도 이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만다는 식이 아니라 적극적 공격적으로 권리를 찾으려는 경향임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신중함이 더욱 요망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언론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액수는 외국의 경우 엄청난 금액에 이르고 있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

- 1) 현재 1991. 9. 16, 89 헌마 165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6 조 제 3 항, 제 19 조 제 3 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프랑스의 반론권제도에 관해서는, Bertrand Cousin et Bertrand Declors, Le droit de communication, Paris, Edition du Moniteur, 1990, pp. 227 ~ 23s; Holland Dumas, Droit de l'Information, Paris, PUF, PP. S87 ~ 607
- 2) Cow de cassation(Ch. crim) 1987. 1. 20, RImasson (참조판례: Cour d'appel de Lyon(4 ch. ,sect. A) 1985. 10. 25, Lignel c.stéAgence Havas).
- 3) 박용상, "정정보도청구권 제도의 일반적 고찰", 언론중재, 1989 가을호: 양삼승, "반박보도청구권(반론권)", 인권과 정의, 1989. 5. 등 참조
- 4) 현재 1991. 9. 16, 89 헌마 165,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6 조 제 3 항, 제 19 조 제 3 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5) 대판 1986. 1. 28, 85 다카 1973.
- 6) 서울고법 제 12 민사부 1983. 11. 17, 82 타 20095 결정
- 7) 현재 1991. 9. 16, 89 헌마 165,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16 조 제 3 항, 제 19 조 제 3 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 소원.
- 8) 김종서, "정정보도청구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헌법논총 제 5 집(헌법재판소), 1994, 491~497 면에서는 반론권의 본질을 단순히 언론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차원을 뛰어 넘어 "권력화한 언론에 대항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정된"(493 면) 것으로 본다.
- 9) 동 결정, 재판관 한병채 이시윤의 반대의견.
- 10) 서울민사지법 1983. 8. 19. 83 카 914510 서 울지 법 남부지 원 94 카합 3123.

- 11) 서울민사지 법 94 카기 4881.
- 12) 서울민사지 법 90 카 41568.
- 13) 서울민사지법 90 디카 41568.
- 14) 청주지법 1990. 7 21. 90 카 1874.
- 15) 대판 1986. 1 28. 85 다카 1973.
- 16) 서울고법 91 카 81540.
- 17) 서울민사지법 89 카 28984.
- 18) 대판 90 나 4848.
- 19) 서울민사지법 1992. 11. 30. 92 카합 3879.
- 20) 서울민사지법 1993. 9. 6. 93 카합 792.
- 21) 서울고법 91 카 65412.
- 22) 대판 1991. 1. 15. 90 다카 25468.
- 23) 서울민사지법 1990. 5. 25. 89 카 28984.
- 24) 서울민사지법 94 가합 36754.
- 25) 서울지법 남부지원 89 가합 13975.
- 26) 서울민사지법 1984. 11. 30. 84 카 34374 :서울민사지법 1984. 11. 30. n4 카 3437s 판결 :서울민사지법 1992. 11.15. 92 카기 474.
- 27) 제주지법 1994. 6. 16, 94 카합 27
- 28) 김종서, "정정보도청구권의 쟁점별 검토", 언론중재, 1995 봄호, 13~ 15 면.
- 29) 서울민사지법 1992. 2. 20. 89 카 8917.
- 30)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 12. 20. 93 카합 1107
- 31) 서울민사지법 1993. 9. 6. 93 카합 792.
- 32) 대판 1986. 1. 28. 85 다카 1973.
- 33) 서울민사지법 1993. 12. 6. 93 카기 3254
- 34) 박용상,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과 절차", 언론중재, 1991 겨울호.
- 35) 헌재 1991. 9. 16, 89 헌마 165, 헌재판례집 제 3 권,532 ~534 면.
- 36) 제주지법 1994. 6. 16. 94 카합 27 판결.
- 37)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 관해서는, 양건, "반론권에 대한 소고-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사례·판례를 중심으로", 김도창 화갑기념논문집, 1982.
- 38) 헌법재판소에서 사죄광고를 위헌 판단한 바 있지만 일본에서는 아직도 사죄광고가 허용되어 있다. 다만 법상 위헌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스스로 사죄광고를 게재하는 것까지 문제될 것은 없다.
- 39) 헌재 1991. 9. 16, 89 헌마 155, 헌재판례집 (1991),527 면.
- 40) 이에 관해서는 위 사건의 소수의견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 41) 언론중재, 1993 겨울호,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참조.
- 42) 언론중재, 1993 겨울호, 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양삼승 편), 가칭 '언론침해의 구제에 관한 법률(안)'참조

43) 이에 관해서는 1993 년도 정책토론회에서 양삼승 판사와 조영일 변호사간의 의견교환이 있었으나 분명히 정리된 것 같지는 않다

- 서울대 법대, 동 대학원 파리 2 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박사)
- 저술: 「프랑스헌법학」, 「주석 헌법」 「프랑스 제 5 공화국의 각료제도」 (Paris, 불어판), 「행정상개인정보보호」, 「정보 공개법제의 현황과 과제」 외
- 현재 영남대 법대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정보공개법 심의위원